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501
----------	-------

발의연월일 : 2025. 8. 29.

발 의 자 : 김현정 · 황명선 · 남인순
양부남 · 박정현 · 김문수
김남근 · 민병덕 · 송옥주
차지호 · 복기왕 · 이강일
의원(12인)

제안이유

「상법」에서는 주식양수도 방식이 아닌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 및 주식매수청수권 등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규정하고 있음.

반면, 기업의 인수·합병 방식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식양수도 방식에서는 인수인이 주식을 양수하여 피인수인에게 지불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모든 주주에게 공유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기업의 경영권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합병 등의 방식과 달리 주식양수도의 경우 주주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여 피인수회사의 모든 주주에게 주식양수도 방식의 인수·합병과정에서 보유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주주의 보호를 두터이 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주식등을 선행매수한 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는 경우 잔여 주식등 전부에 대하여 공개매수를 하도록 함(안 제133조제4항 신설).
- 나. 의무공개매수가격은 선행매수 가격과 기업의 순자산가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가격 이상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41조제3항 신설).
- 다. 의무공개매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공개매수를 완료하기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선행매수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안 제145조제2항 신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3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을”을 “제3항 또는 제4항을”로 한다.

④ 주식등을 매수등(이하 “선행매수”라 한다)을 한 자가 그 매수등을 한 후에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는 경우(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인 자가 그 주식등의 매수등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주식등의 총수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수를 뺀 잔여 주식등 전부에 대하여 공개매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등의 목적, 유형, 그 밖에 다른 주주의 권익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를 “경우(제133조제4항에 따른 공개매수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개매수자가 제133조제4항에 따라 공개매수를 하는 경우 그 매

수가격은 선행매수 가격과 기업의 순자산가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가격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4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133조제3항”을 “제133조제3항·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33조제4항에 따른 공개매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공개매수를 완료하기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선행매수한 주식(그 주식등과 관련한 권리 행사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46조제2항제9호 중 “제141조를”을 “제141조제1항 또는 제3항을”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제145조를”을 “제145조제1항 또는 제2항을”로, “같은 조”를 “같은 조 제1항”으로 한다.

제445조제19호 중 “제133조제3항”을 “제133조제3항·제4항”으로 한다.

제446조제26호 중 “제145조”를 “제145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개매수에 관한 적용례) 제13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행매수가 이루어진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3조(공개매수의 적용대상) ① ~ ③ (생략) <u><신설></u>	제133조(공개매수의 적용대상)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주식등을 매수등(이하 “선행매수”라 한다)을 한 자가 그 매수등을 한 후에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25 이상 이 되는 경우(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인 자가 그 주식등의 매수등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주식등의 총수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수를 뺀 잔여 주식등 전부에 대하여 공개매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등의 목적, 유형, 그 밖에 다른 주주의 권익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u>	<u>⑤ 제3항 또는 제4항을-----</u>

증권시장에서의 경쟁매매 외의
방법에 의한 주식등의 매수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수
의 경우에는 증권시장 밖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⑤ (생략)

제141조(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

①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신고
서에 기재한 매수조건과 방법
에 따라 응모한 주식등의 전부
를 공개매수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다음 날 이후 지체 없이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공개매수공고에 게재하
고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응모
한 주식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2. (생략)

② (생략)

<신설>

~.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41조(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

① -----

-----경
우(제133조제4항에 따른 공개
매수는 제외한다)-----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공개매수자가 제133조제4항
에 따라 공개매수를 하는 경우

제145조(의결권 제한 등) 제133조 제3항 또는 제134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그 주식(그 주식등과 관련한 권리 행사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주식등(그 주식등과 관련한 권리 행사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그 매수가격은 선행매수 가격과 기업의 순자산가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가격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45조(의결권 제한 등) ① 제133조제3항·제4항-----

-----.

② 제133조제4항에 따른 공개매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공개매수를 완료하기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선행매수한 주식(그 주식등과 관련한 권리 행사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46조(조사 및 조치) ① (생략)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자, 공개매수자의 특별관계자 또는 공개매수사무취급자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그 공개매수를 정지 또는 금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 ~ 8. (생략)

9. 제141조를 위반하여 공개매수를 한 경우

10. 제145조를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같은 조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4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6조(조사 및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8. (현행과 같음)

9. 제141조제1항 또는 제3항을-----

10. 제14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같은 조 제1항-----

제445조(벌칙) -----

-----.

1. ~ 18의4. (생략)	1. ~ 18의4. (현행과 같음)
19. 제133조제3항 또는 제140조를 위반하여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자	19. 제133조제3항·제4항----- ----- -----
20. ~ 48. (생략)	20. ~ 48. (현행과 같음)
제4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6조(벌칙) ----- ----- ----- -----.
1. ~ 25. (생략)	1. ~ 25. (현행과 같음)
26. 제145조, 제150조제1항·제3항, 제167조제3항 또는 제168조제3항에 따른 처분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26. 제145조제1항----- ----- ----- -----
27. ~ 64. (생략)	27. ~ 64. (현행과 같음)